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폐지를 넘어
권리를!

추천사

오승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마치 인간의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듯한 기존의 추상적 권리론에 ‘육체성’과 ‘시간성’을 부여하는 비교적 새로운 권리 담론 중 하나이다. 우리는 아무런 시공간의 제약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자기결정을 행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펼쳐 나가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몸이라는 공간에 기반하여 타인의 몸과 교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존재이다. 이 새로운 권리론은 나의 몸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좌표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의 깨달음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그동안 적절하게 대변되지 못했던, 우리가 육체성에 기반하여 가지는 욕구 - 성적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욕구, 재생산 활동에 대한 욕구를 긍정하고, 사람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더 솔직한 인권 개념을 정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권리체계이다.

사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들여다보면, 생소하거나 기존에는 전혀 없던 권리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신체의 자유와 신체적 완전성, 자기결정권, 출생률과 생산력을 위한 도구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인격권, 일과 학업,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평등권 등 분절되어 있던 권리들이 실제로는 서로 연관지어 파악해야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의 몸과 생애에

대한 자기통제의 문제임을 드러내는 포괄적인 권리틀인 것이다. 이는 특히 여성의 권리 담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장기간에 걸친 삶의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생애기획 프로젝트이고, 그만큼 여성의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일, 인간관계, 정치적·사회적 참여, 장래희망, 독창성 등 “가히 그녀가 존재할 권리와 결합”(*)되어 있다. 성과 재생산에 얽힌 여성의 신체적 관련성에서 비롯하는 신체적 완전성 또는 신체적 자기결정의 요구와, 여성의 억눌린 사회 내 지위에 기반한 사회적 요구라는 성과 재생산에 대한 두 가지 여성주의적 관점을 결합해낼 수 있는 상호연관적인 권리라는 점에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개념의 효용성이 있다. 성과 재생산의 결정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사회경제적 장벽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기 힘들고, 그럴 경우 개인의 선택권이란 거의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임신을 중지할 권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낳을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두 가지 권리를 함께 엮어낼 권리틀이 바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모성 개념이란 오로지 출산을 그 목표와 정점으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성 개념을 전향적으로 재해석하여 위 조항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기

본법 제6조 제4항이 “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개인의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로서 기본법을 도입하는 것은,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으로 낙태에 대한 규제로부터 재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인식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udge Dooling in *McRae v. Califano*, 491 F. Supp. 630(1980), p.742, Rosalind Petchesky, *Abortion and Woman’s Choice: The State, Sexuality, and Reproductive Freedom*, 1990, p. 5에서 재인용.

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에 부처

나영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며 외쳐온 구호들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의 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제시했던 개정 입법 시한을 6개월 앞둔 지금, 누군가는 “언제까지 전면 비범죄화만 주장할 것이냐, 이제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타협안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또 누군가는 “이대로만 버티면 형법상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는 것이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권리를 보장받았다 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적절히 타협한다면 과연 그 현실은 누구의 현실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임신을 하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는 현실에서 임신중지를 하게 되는 것은 선택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12년 11월 임신 23주차에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던 청소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단지 ‘낙태죄’의 처벌 조항만이 아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청소년이라는 위치, 성관계에서부터 임신중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혼자서 고민하고 감당하게 만들었던 파트너와의 불평등한 관계, 여성에게만 남겨지는 사회적 낙인, 돈을 받고 시술을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담당 의사와, 임신중지를 다른 의료 행위처럼 환자의 시술 전후 건강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책임감 있는 행위로서 교육하고 실행하지 않게 만들어 온 보건의료 현실, 모두에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고려되기 보다는 국가, 가족, 학교, 일터, 시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임신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임신을 못 하는 것이 큰 일이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동의와 존중은 그저 개인의 배려나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협소한 의미로만 남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피해를 통해서야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일에만 너무 익숙해져 왔다. 그래서 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를 입증해야 했다. 흔히 말하는 ‘현실적 타협안’으로 임신 초기에는 누구나 임신중지가 가능하고 중기 또는 후기에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등 특정한 사유에만 임신중지가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해보

자. 여전히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만 정당한 임신중지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현실은 변하지 않거니와, 성폭력 피해자는 임신중지를 하는 것만이 당연하다는 인식 속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은 쉽게 삭제되고 만다. 우리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인정과 별개로 당사자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임신중지를 하게 되는 상황도, 임신 유지를 결정하는 상황도 처벌은 물론 정당함을 인정받고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행위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실함의 척도를 따져서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면 허락해 주겠다는 국가와 사회의 알량한 아량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든 강요나 폭력 없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계획할 수 있도록 사회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국가와 사회 혹은 누군가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만이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만들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편견 없고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낙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찾아가서 어려움 없이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성관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 전 과정에 걸친 우리의 권리와 몸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 노동, 의료, 사회복지 등

전 영역에서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는 기본법을 요구한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성과 재생산 권리’이며, 성과 재생산 권리는 곧 삶에 대한 권리이다. 우리가 만들고 요구할 이 법의 이름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이다.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은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담는다. 차별이나 낙인, 폭력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 받는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한다. 성별, 나이, 장애, 질병,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거주 지역, 소득 수준, 이주 지위 등이 권리를 제약하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법을 통한 권리의 명시나 법적 보장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를 실질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 법을 제안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임신중지를 강요받지 않는 사회,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만 자신의 삶의 조건을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 학교와 가정, 일터에서 쫓겨날까봐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HIV 감염인과 난민이 동등한 사회적 권리와 성적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난임에 대한 책임과 지원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사회, 안정적인 노동과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함을 잘 알고 실현하는 사회로의 첫걸음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인가?

최현정

그동안 세어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건강 보장’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에 따른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성·재생산 권리는 포괄적인 권리틀이므로 그 권리의 세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선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신·임신중지·출산에 국한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성·재생산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나이 등을 감안하여 특히 더 강조되어야 할 성·재생산 권리는 무엇일까요? 낙태죄가 존재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권리가 성·재생산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재생산 권리의 세부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원칙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 원칙이 모든 생활 영역의 개별 법률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입법 형식이 '기본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방향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 정부의 권한과 활동의 기준·절차·조직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형식입니다.⁽¹⁾ 기본법의 제정은, 그 분야 정책이 중요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히 하면서, 법의 방향성과 지침에 따라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국회의 구성이나 내각이 변경되더라도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념이나 제도의 형성과 정착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그 제정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교육효과를 의도하기도 합니다.

현재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에 관한 조항들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데 일관된 원칙이 없고,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

법 제74조 제3항).^[2] 그런데 이 조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합법적’인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인 경우에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형법 낙태죄-모자보건법 허용사유’ 체계에서, ‘불법’으로 유산한 근로자에게도 휴가를 지원하라고 현행법에 규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불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임산부의 보호”라는 조문의 제목과 그 입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모자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법이 필요합니다.^[3]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의 지속과 출산에 중점을 둔 입법 목적에 따라,^[4] 난임(임신 지원)과 산후조리(출산 지원)에 관한 조항이 대부분입니다. ‘모’와 ‘자’에 국한된 법률이라, 모성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모성을 선택하지 않도록 강요 받는 사람(대표적으로 정신적 장애인), 자녀 출산을 의도하지 않은 성·재생산 권리까지 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범명까지 전부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본법의 형식이 아닌 이상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목적과 기본이념부터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 그럼으로써 “개인의” 권리 실현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기본이념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최신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함께,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제2조(기본이념)).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도 명시하였습니다(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이러한 원칙이 이후 다른 개별 법률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5]

이와 함께,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정보접근권 등 성·재생산 권리 실현을 위한 대표적 권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권리로, 월경, 피임,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보조생식기술, 임신 출산과 임신중지,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한 권리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지원의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본법은 그 특성 상,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아주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기본법이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체제에 맞추어 개별 입법에서 구체적인 정책사항이 규율되어야 합니다.⁽⁶⁾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벌칙 조항을 통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개별 법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정부가 ‘성·재생산 건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몇몇 분야의 경우, 너무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과 내용·항목, 정신적인 장애·나이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절차 등은, 일반적인 기본법의 추상적 규정 형식을 넘어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세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을 계기로, ‘임신 중지 전면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권리와 제도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하 이 문단에서 기본법의 기능은 같은 글 24~34면 참조.

[2]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행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선혜,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 모자보건법의 비판적 검토 및 개정방향 모색, 『이화젠더법학』제12권 제2호, 2020 참조.

[4]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많은 기본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양성평등기본법」 제6조, 「보건료기본법」 제9조 등). 우리의 법 체계 상 기본법과 개별 법률 관계는 총론과 각론의 관계와 같으며, 기본법이라고 하여 개별 법률보다 '상위'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기본법이 개별 법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법률'들은 모두 동일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본법은 입법지침 또는 고려사항으로서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관련 법률을 해석할 때 그 지침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황승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공법학연구』제11권 제1호, 2010, 249~255면 참조.

[6] 황승흠, 위의 글, 249면

‘모성보호’를 거부한다

김정혜

2020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을 했다. 선언을 보도한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여성의 제일 좋은 훌륭한 일은 출산과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국가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분석 결과 피임을 보급하고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를 확대했고, 인구 감소가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견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용하다는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경제 위기의 해법은 다른 데서 찾아야 마땅할 것 같기는 하지만, 여하튼 국가에게 인구는 ‘조절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인구 정책 속에서 여성은 ‘가족계획도 안 하고 애만 많이 낳는 짐승’이 되었다가 ‘애도 안 낳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었다가 했다.

아직도 명절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 생애주기를 듬뿍 담은 인사를 품고 온다. 대학은. 취업은. 결혼은. 좋은 소식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훌륭한 일’이고 ‘좋은 소식’이다. 어떤 여성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는 평생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어떤 여성은 원하더라도 사회가 부정한다는 사실은, 침묵된다.

여성의 일차적 위치를 어머니에 두는 단어가 ‘모성’이다. 모성의 사전적 정의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정신적·육체적 성질. 또는 그런 본능”이다. 여성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할 것이고, 또 마땅히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도 세워졌다. 오랫동안 여성노동자는 ‘잠재적 어머니’ 집단으로서 노동 관계 법률에서 강제로 보호 당했다. 이제 ‘저출산’ 시국에서 모성보호 정책은 노력해서 임신하고,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여성은 어머니가 될 ‘의무’를 진다.

임신에서 출산으로, 육아로 이어지는, ‘어머니 되기’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사람들이 생애 동안 직면하는 수많은 필요와 욕구를 놓친다. 여성들과 남성들, 그리고 이분법적 성별로 대표되지 않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 말고도 많다. 자신에게 맞는 피임법이나 성매개감염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접근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원치 않는 임신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것,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고 사후 관리를 받는 것,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는 것, 피임이나 성관계에서 실질적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 강요당하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또는 혼자서 그리는 삶의 전망 속에서 자녀를 계획하는 것, 생식력 손상의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나이나 장애, 언어의 제약 없이, 성과 재생산 관련 정보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것, 환경 이후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접근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성과 재생산 관련 진료가 필요할 때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이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의료기관 이용에서 차별이나 낙인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구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더구나 모성보호 정책은 임신,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지도 못하고 있다. 중증 신체장애인이 임신, 출산을 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려면, 장애 특성에 맞는 의학적 정보와 의료 서비스, 그에 대한 접근가능성, 양육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시설로 격리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 평등하고 안전한 성관계가 가능한 조건도 필요하며, 장애를 이유로 피임이나 인공임신중절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비혼인, 성소수자가 자녀를 가질 수 있으려면 ‘비정상적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려 한다는 비난이나, 자녀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한국어나 음성 언어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안전하게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려면, 의료 서비스에 있어 각자에게 적합한 방법의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혼 관계의, 이성애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라야 행복하다는 ‘정상가족’의 지향 속에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혼인,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등 어떤 집단의 임신, 출산은 애초에 선택불가능한 일이거나, 환영받지 못하거나, 없는 듯 외면당한다. 보호되는 모성은 따로 있다.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정책을 담은 「모자보건법」은 임신부·영유아·미숙아의 건강 관리, 난임 지원, 산후조리업 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생산권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모성보호나 모성권이 아닌, 성적 권리와 재생산의 권리를 전면에 내세운다. 국가가 원하는 ‘정상적인’ 모성 말고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은 많기 때문이다.

제안 이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70.1%가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이라고 답하였으며, 피임 실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져, 대한산부인과사회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하루 평균 3,000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추산함. 성교육과 피임 실천의 미비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7.2%가 피임이 국가의료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93%가 성매개감염 등에 대한 건강검진에 국가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국가가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높음. 그러나 국가는 성과 재생산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가족계획사업 시기에는 인구 조절을 위하여 국민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음. 현재 국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역시 저출산 위기 대응이라는 인구 조절 목적에 따라 난임치료, 출산 장려, 보육 지원에 집중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음.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과 재생산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이 인구정책에서 개인의 권리와 건강으로 이동하여야 함. 이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에 드러난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기도 함.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은 인권의 필수적 부분으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성평등한 사회 구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이에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교육기관 등의 의무를 정하고자 함.

이 법안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성과 재생산에 대한 결정이 국가의 인구 조절 목적은 물론이고 가족, 시설 등의 필요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차별이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 실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며, 개인의 건강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관련 제도 설계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나아가, 성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 등 사회 제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법안의 구조



제1장에서는 본 법률의 목적과 이념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 법에서 추구해야 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명확히 한다.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 법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정책에 있어 이 법을 우선시 함을 분명히 한다.

제2장에서는 성·재생산권리의 권리 내용을 확인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구성요소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추렸다.

제3장은 정부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제4-9장에서는 성·재생산 건강권의 내용을 사안 별로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한다.

제10-12장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해야 할 지원의 방향 및 주요 지원 영역인 의료·상담·통역·활동 지원에 종사하는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과 의무를 규정한다.

제13-15장에서는 일터, 교육기관, 보호·복지시설에서 보장해야 할 권리와 사용자 및 기관의 장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안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안에서는 보장되어야 하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의 내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 권리는 임신과 출산에 초점을 두는 ‘모성보호’가 중심이 되었다. 재생산을 여성의 영역으로 제한하고 모성을 보호 대상으로만 두는 태도에서 진일보하여 등장한 ‘모·부성권’은 모와 부의 ‘권리’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모·부성권’ 역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만을 말하는 한계가 있다. 이 법안은 ‘임신을 하고 자연분만기까지 임신을 유지하여 출산에 도달’하는 일부 재생산 영역의 협소한 보호를 넘어서, 성과 재생산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들을 명시한다. 또한 성과 재생산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권리의 형식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제1장 총칙

조항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건 의료 정보와 최신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1~4조]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는 성과 재생산의 유기적 연결성과 건강과 권리의 밀접한 관련성에 기반한 통합적 개념이다. 성적 권리, 성적 건강, 재생산 권리, 재생산 건강은 현실에선 명확하게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추후 논의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용어 정의는 필요하다고 여겨 각각의 정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텔싱 범죄나 강제임신증지는 재생산 권리의 침해, 동의한 임신중지의 의료과오로 인한 신체적 손상은 재생산 건강의 침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침해라고, 새로운 법안 마련 혹은 가중요건 신설을 요청할 때 침해되는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조항

조문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권리”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친밀한 관계의 형성 및 성행위의 여부·상대방·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말한다.
2. “성적 건강”이란 생식기의 기능과 발달에 있어서 질병, 기능저하, 장애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관에 입각한 성행위를 통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3. “재생산 권리”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법, 자녀의 수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말한다.
4. “재생산 건강”이라 함은 생식세포·생식기관의 기능 및 발달에 있어서 질병, 기능저하, 장애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 시도·유지·중지, 출산, 양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1,3호]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는 스스로의 성과 재생산에 대해 ‘결정할 권리’일 뿐 아니라 ‘행사할 권리’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자신의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모든 사람이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2,4호] ‘질병, 기능저하,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건강의 좁은 정의로 통용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없다’ 대신 ‘그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조항

조문

제3조

(기본이념)

5. “성·재생산건강사업”이란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임신, 출산, 임신중지, 성매개감염 등과 관련하여 성·재생산건강을 증진하고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피임시술”이란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 자궁 내 장치, 피하 이식 장치 삽입 등의 의료적 개입을 말한다.
7. “비가역적 피임시술”이란 난관 절제술, 정관 절제술을 말한다.
8. “보조생식기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와 난자의 채취 및 배아의 생성, 인공수정, 체외수정, 생식세포의 냉동 보관 등의 의료적 개입을 말한다.
9. “성매개감염”이란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성행위로 매개되는 감염을 말한다.
10. “통역”이란 외국어통역뿐만 아니라 문자통역(속기), 수어통역 등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다.
1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보건의료를 말한다.

조항

조문

제3조

(기본이념)

12.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13.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14.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5. “보호·복지시설 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다수인 보호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권리)

-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를 제2장이 아닌 제1장 총칙에 둔 것은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차별을 불식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법적·사회적 차별은 개인의 성·재생산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 중 하나이며, 개인의 건강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은 기본법의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처럼 재생산 건강에 직결된 법률 뿐 아니라,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 의료법 등 일반적인 법률 내부에 있는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관련 조문들의 상위 규범이 된다.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조항	조문
제8조 (자기결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모든 사람은 성행위,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보조생식기술 사용 등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결정권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②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과 관계 없이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을 이유로 자율성과 심신의 완전성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③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인구조절 목적, 행정상의 편의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건강, 행복 등에 대한 제3자의 고려도 자기결정권을 부정할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신분인 자의 항문성교가 합의 하의 것이라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고, 군내 동성애를 범죄화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제1항, 제2항 모두를 위배하는 조문이다.

성 특징이란 성기 및 기타 생식기관, 염색체, 호르몬, 사춘기의 2차 성징 등 성에 관련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의미한다. 그동안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신체적 특징이 발견되면 '성 발달 장애'로 분류되곤 했으나, 국제사회는 해당 용어에 내재된 사회적 낙인을 지적하면서 대안적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의 성 특징을 본인 동의 없이 교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교정되지 않은 성 특징을 이유로 차별한다면 제2항에 위배된다.

조항

조문

제9조 (건강권)

모든 사람은 질병 예방, 치료,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성·재생산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과학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성적 즐거움의 향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로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부인하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되고, 성적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항

조문

제11조

(정보접근권 등)

-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의료인 등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환자의 장애, 나이, 언어 등을 고려하여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을 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보장)

모든 사람은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자신의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항	조문
제13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6조에 따른 성·재생산건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재생산건강사업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성·재생산건강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3.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4.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지원 방안
5.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국내외 정보·통계의 수집 및 번역·관리방안
6.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인력과 상담기관 확보 및 관리방안
7. 성·재생산건강 보장을 위한 근로 및 휴게환경의 조성
8.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 징,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여부, 이주 지위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한 성·재생산건강사업계획
9. 제3호부터 제6호의 각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차별 실태 조 사 및 교육·시정방안
10. 중앙행정기관 간의 성·재생산건강 추진계획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11. 그밖에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3호의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의료자 원 조달 및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 등의 확충과 접근성 확보 방안
2.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지원, 보급 방안
3.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인이 성·재생 산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설 및 자원, 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4.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보급, 정보 제공, 교육에 관한 사항

[제14조 2항 1호] 지역별 편차 해소, 응급 의료,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이송방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다.

③ 제1항 제4호의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법 제9장 포괄적 성교육의 추진계획 및 그 추진방법(포괄적 성교육 인력 교육, 포괄적 성교육 실태 조사를 포함한다.)
2. 이 법 제10장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상담기관 등의 확충 및 접근성 확보 방안
3. 이 법 제11장 성·재생산건강에 관련된 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
4. 이 법 제12장과 관련한 의료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
5. 상담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보호·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시정 방안

④ 제1항 제5호의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국내외 정보·통계의 수집 및 번역·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터, 교육기관, 보호·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성·재생산건강 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시정 방안 강구
2.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임신, 출산, 임신중지,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과 관련한 건강, 권리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조항

조문

3. 월경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초경, 완경을 포함한 생애 전반에 있어서 월경의 영향에 관한 연구 등
4.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침해와 관련된 의료, 주거, 근로 환경 등과 관련한 정보·통계

[제14조 4항 1호] 가족계획사업 등 인구정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화 중심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침해에 관한 조사도 포함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 역시도 조사의 대상일 수 있다.

제15조

(추진계획의 수립)

- ① 이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 마련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의료기관 등의 확충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16조

(성·재생산
건강 심의위
원회)

조문

- ① 성·재생산건강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성·재생산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재생산건강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성·재생산건강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각부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법제처장
 2.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주 지위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월경

조항

조문

제17조 (월경용품)

-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에 따라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월경용품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월경용품의 가격 안정 지원, 무료 제공, 공공 시설 비치 등의 조치로 모든 사람이 제약없이 월경용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성별 등에 따른 제약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 1항] 성별 정정에 생식능력 제거가 요구되지 않고, 간성(intersex) 상태의 유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법적 성별이 여성이 아닌 사람도 월경,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하 이 법에서는 권리의 주체를 ‘모든 여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정했다.

[제17조 2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는 월경용품의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17조 4항]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것이 소득 수준에 따른 접근성의 제약을 야기하고 있다.

제5장 피임

조항	조문
제18조 (피임용구와 피임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에 따라 피임용구와 피임약제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국가는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복용법을 알리고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용구와 피임약제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구매 제한 해제, 판매처 확대 등의 조치로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성별 등에 따른 제약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18조 2항]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피임약제와 피임용구의 사용은 가족계획사업 속에서 여성에게 집중되어왔다. 해당 조항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사용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관행이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을 통제함으로써 인구조절을 할 수 있다고 믿어온 국가의 관성과 재생산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여기는 사회문화적 관습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확립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제18조 4항] 여기에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의 개정이 포함된다. 세계산부인과학회(FIGO) 등 의료 전문가들은 공공 정책의 차원에서 응급피임이 모든 여성들에게 항상 쉽게 사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전세계 76개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조항

조문

제19조 (피임시술)

- ① 모든 사람은 임신 예방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피임시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피임시술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용 지원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의사는 환자에게 비가역적 피임시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후 스스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비가역적 피임시술을 할 수 있다.
- ⑤ 비가역적 피임시술은 의사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시술되어야 한다.

[제19조 2항] 제18조 2항 해제 참조

제6장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조항	조문
제20조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모든 사람은 필요에 따라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관련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는 의학적 근거와 성·재생산건강을 기준으로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수술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국가는 개인이 결정한 성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성적 정체성에 따른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을 보장하며, 그 결정을 이유로 개인의 신체 완전성 및 성·재생산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가는 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결정을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재화의 이용 등에 있어 개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어나면서 지정받은 성별과 다른 성으로 바꾼다는 의미로는 ‘성 전환’이 더 널리 알려진 표현이지만, 스스로 원하는 성별을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로 ‘성별확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의료적 조치를 통해 스스로의 성별 정체성과 신체를 부합시키는 것은 성별 위화감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7장 보조생식기술

조항	조문
제22조 (보조생식 기술 사용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보조생식기술의 사용 여부·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② 보조생식기술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보조생식기술의 사용 여부, 횟수 등을 제한할 때에는 의학적 근거와 성·재생산건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생식기술 사용과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할 때에는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 1항] 해당 조항은 보조생식기술의 사용이 인구정책의 변화 혹은 가족의 압력에 의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보조생식기술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실천은 재생산 건강의 관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 현 인구정책의 목표처럼 출생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생식기술의 사용이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사용될 때 의료기술의 당사자(주로 여성이다)의 재생산 건강은 부차화되고 도구화되는 경향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항

제23조
(정보제공과
비밀보장)

조문

- ① 보조생식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각각의 보조생식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정확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보조생식기술을 시술하는 의료인 등은 환자에게 시술의 전과정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며, 환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보조생식기술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은 보조생식기술 사용과 관련한 의료적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8장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조항

조문

제24조

(임신 및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

- ① 모든 사람은 임신 기간 중 또는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가진다.

기존 형법은 '낙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미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 용어일 뿐 아니라 태아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라 임신한 사람의 경험과 결정을 지칭하기 어렵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파술 뿐 아니라 흡입술과 같은 다양한 시술방식이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약물 임신중지를 포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서는 '임신중지'를 대안적 용어로 사용했다. '중지'라는 표현은 임신의 '유지'가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지속되는 과정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제25조

(임신 기간
중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한 사람에게 의료 비용, 의료기관에의 이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임신 기간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적, 문화적 배경,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조문

제26조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③ 국가는 임신한 사람이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되거나 체포·구속되는 경우에 따른 적절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한 사람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 의료기관에의 이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출산 및 산후조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문화적 배경, 언어 등을 고려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

(임신중지 정보접근권 등)

①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상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보, 상담, 보건 의료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 상담인력, 의료인 등은 임

조항

조문

신증지와 관련한 정보, 상담,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1항] 임신증지에 있어서 정보, 상담, 서비스 등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제공 여부가 정해져야 하며, 제공할 때에도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원치 않는 경우에도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려준다거나, 법적으로 숙려기간 혹은 상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선 안 된다.

[제27조 2항] 임신증지의 과정에 대해 상담하거나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지 그룹, 지역적 자원의 종류, 접근 방법, 법적 권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28조

(임신증지에 관한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증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의료 비용, 의료기관에의 이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임신증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적,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는 장애, 나이, 소득 수준, 이주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포괄적 성교육

조항

조문

제29조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 ① 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인권에 기반하여 성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하 ‘포괄적 성교육’이라 한다).
- ② 모든 사람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포괄적 성교육(CSE)이란 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과정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안녕, 존엄과 자긍심에 대한 인식 능력, 사회적·성적 관계에서 상호존중하는 관계 형성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신체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 능력, 개인의 삶에 주어진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장 및 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이 공교육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필수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제30조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

- ① 포괄적 성교육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조항

조문

제31조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 ② 포괄적 성교육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여야 한다.
- ③ 포괄적 성교육은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촉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포괄적 성교육 교안과 자료는 교육 받을 사람의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어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장과 발달, 몸 이미지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2.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4.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 및 성매개감염의 예방을 위한 지식과 정보

조항

조문

5. 성적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상담·지원 기관 등에 관한 정보
6. 그밖에 성과 재생산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제31조 1,3호] 포괄적 성교육은 교육대상에게 모든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에 대하여 가르치고, 부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해악을 탐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안과 자료는 적극적으로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인지하여야 하며, 관계에 대해 논하거나 예시를 들 때에는 동성 관계를 포함한다.

[제31조 4호] 음주, 약물섭취 등으로 인해 안전한 성관계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매개감염, 원치 않는 임신, 성폭력 등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31조 5호] 그루밍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적 학대에 관한 정보와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집단 따돌림 등 폭력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적 학대와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지역적 자원의 종류, 접근 방법, 그 접근에 있어서 교육대상의 법적 권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31조 6호] 포괄적 성교육은 교육대상이 성에 관한 건강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또래 집단의 압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협상과 거절의 기술, 고위험 행위를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이 부모, 보호자, 기타 신뢰하는 어른과 성에 대해서 소통하도록 격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신체적·정신적 변화 과정 및 경로에 대해 상담하거나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지 그룹, 지역적 지원의 종류, 접근 방법 및 법적 권리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조항

조문

제32조

(교육기관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등)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과정별로 아동 및 청소년의 나이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적 건강 및 성매개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응급피임약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피임약제의 피임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정보
 2. 성매개감염의 특성·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예방 및 치료 약제에 관한 정보

조항

조문

3. 성매개감염인에 대한 차별, 사회적 낙인
 4. 기타 성적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③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장은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각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학생의 나이에 적합하고 의료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 2항 2호]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 특정집단에서만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와 다른 성매개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보
-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포함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와 다른 성매개감염의 예방에 관한 정보

조항

조문

제33조

(포괄적
성교육
담당교사
교육 등)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모든 교육과정의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를 교육하여야 한다.
- ②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함에 있어 이 법 제5조 및 제30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1조 및 제32조 제2항 각호에 관하여 정확한 최신 연구 결과 및 제도 변화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장 상담과 상담기관

조항	조문
제34조 (상담제공)	<p>①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정한 종류의 상담을 받도록 강제받지 아니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본조의 상담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성행위, 월경,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의 탐색과 결정, 성매개감염의 예방과 관리 등 생애 전반에 있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사항과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에 관한 상담이 포함된다.</p>
제35조 (상담에서의 특별한 고려)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지위, 문화적 배경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기</p>

조항

조문

제36조

(상담인력
양성·보수
교육 등)

관 및 상담인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에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건강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하 '상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인력 양성·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담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내담자의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성매개감염 여부를 고려한 정보와 이를 반영한 상담 가이드라인
3. 이 법 제29조부터 제31조에서 규정한 포괄적 성교육

②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중립적이고 정확한 성·재생산건강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상담인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력에는 다음 각 호 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상담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조항

조문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④ 그밖에 상담인력의 범위, 자격요건, 양성·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조문

제37조

(상담인력의
의무)

- ① 상담인력은 내담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담인력은 내담자에게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 없이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상담인력은 내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담인력은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38조

(상담기관의
접근성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활하게 상담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담기관의 편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상담기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담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장 통역 등 지원인력

조항

조문

제39조

(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 ①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관련 통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게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제39조 2항]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알맞은 상담 기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

(통역 등 지원인력의 의무)

- ① 통역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통역 또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통역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통역 등이 필요한 사람의 성·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

조항	조문
제41조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	<p>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이 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의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2. 「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가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인의 보수교육3. 「보건의료기본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양성 및 보수교육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p>② 제1항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환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2. 환자의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여부를 고려한 진료·의료행위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3.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와 방식에 관한 교육 <p>③ 제2항 각 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방식, 강사의 자격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조항

조문

제42조

(의료인 등의 의무)

- ① 의료인 등은 환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료인 등은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 없이 환자를 상담·진료하여야 한다.
- ③ 의료인 등이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제43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 ① 모든 사람은 본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전부 사용하여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추정한다.
- ② 의료인 등은 정신적인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쉬운 표현, 사진, 물품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포함한다)를 제공한다.
 2.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여러 번 설명하고, 환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3. 환자가 의료인 등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의료인 등의 설명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조항

조문

제44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를 위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결정하여야 하며, 환자의 권리 및 행동의 자유 제한이 더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등이 환자를 진료·상담할 때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그밖에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활하게 의료기관 등에 접근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의료기관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장애 유형과 특

조항

조문

제45조 (국가필수 의약품의 지정)

성, 나이, 이주 지위, 언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지원에는 비용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대상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확대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함에 있어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뜻한다. 응급피임약, 유산유도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은 필요로 하는 때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서 항상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장 일터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조항	조문
제46조 (근로자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모든 근로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한다.③ 모든 근로자는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배제 또는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5조와 제72조는 가임기 여성을 유해물질 작업장과 갭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남성 근로자를 유해물질에 노출시킴으로써 제2항을 침해하고, 여성 근로자의 배제 및 차별을 유발함으로써 제3항을 침해한다. 근로자의 성과 재생산 건강의 보장은 일터의 환경 조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조항

조문

제47조

(성·재생산
권리 보장
조항 이행
실태조사와
보고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근로기준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장의2에 관한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며, 성·재생산건강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휴가 외에도 피임수술, 보조생식기술, 임신중지,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관련 의료서비스 등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 없이 평등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

(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출산, 임신중지, 양육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관련 의료서비스 등의 휴가·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 건강 및 권리가 보장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항

조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관련한 사용자의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 2항]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성과 재생산 건강을 해치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근로 및 휴게 환경 조성
- 임신시도 및 보조생식기술 사용, 임신중지, 출산, 육아 등을 사유로 한 휴가 제도 시행
- 위의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불이익 처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
- 근로자의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 보장

제13장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조항	조문
제49조 (학생의 성·재생산권리와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모든 학생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학생은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권을 가지며,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등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50조 (교육기관장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이성 및 동성교제, 성별 표현 등을 금지하는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를 이유로 학생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학생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기관장은 월경통,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장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기관, 지역 영유아

조항

조문

보육시설 정보 등 학습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교육기관장은 학생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교직원, 다른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과 재생산건강을 증진하고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 2항] 필요한 조치에는 월경공결제, 출산전후 요양 기간의 보장, 보충 수업의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50조 4항] 적절한 조치에는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 학생의 성과 재생산 경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50조 5항] 필요한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성·재생산건강 클리닉 / · 성중립화장실 / · 수유실 /
- 육아 휴게공간 / · 보육지원센터

조항

조문

제51조
(고등교육
기관장의
의무)

- ① 고등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관한 고등교육기관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 1항]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성과 재생산 건강을 해치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환경 마련
- 임신시도 및 보조생식기술 사용,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을 사유로 한 휴가, 휴학,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등의 제도 마련
- 학생 등 구성원 대상 무료 건강검진 항목에 성과 재생산 건강 포함
- 위 제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이 임신시도 및 중지, 출산, 육아 등을 목적으로 또는 그와 관련한 사유로 지도교수나 연구책임자와 학업·연구·업무에 관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
- 학내 공간에 자녀를 동반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

제15장 보호·복지시설 등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조항	조문
<p>제52조 (시설거주자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p>	<p>① 모든 보호·복지시설 등의 거주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시설거주자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② 모든 보호·복지시설 등의 거주자는 시설 입소 및 거주 상황에서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한다.</p>

보호·복지시설에서의 성·재생산권리 침해는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발생해왔다. 시설에 맞는 몸은 사회에 살 수 없는 ‘무능한’ 몸, 생식 능력도 필요하지 않은 몸, ‘관리가 어려운 몸’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다. 1999년 김홍신의원이 제기한 시설 내 강제불임시술의 문제는 그 이후에도 시설 비리의 하나의 양상으로 증언되어 왔으나 제대로 조사되거나 처벌된 적이 없다.

시설거주자의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금’ 성격의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며, 성·재생산권리 증진 방안은 탈시설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탈시설이 선택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조항

제53조
(보호·복지
시설 등의
장의 의무)

조문

- ①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를 이유로 시설거주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이 보장되는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관련한 보호·복지 시설 등의 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해외 법제

미국 뉴욕시 성중립 화장실 관련 법안

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A5039/
S6349)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괄적 성교육 법안

California Healthy Youth Act (AB 329)

미국 일리노이주 재생산 건강법

Reproductive Health Act (HB 2495)

프랑스 공중보건법

Code de la santé publique

영국 임신중지법

The Abortion Act 1967

영국 의료인 비밀유지

General Medical Council Good Medical Practice 2013

영국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맨섬 임신중지법

Abortion Reform Act 2019

뉴질랜드 임신중지법

Abortion Legislation Act 2020

호주 빅토리아주 임신중지법

Victorian Abortion Law Reform Act 200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임신중지법

Abortion Law Reform Act 2019

호주 테즈매니아주 재생산건강법

Reproductive Health (Access to Terminations) Act 2013

멕시코시티 주 헌법 (성 및 재생산 권리)

Constitution of Mexico City

아르헨티나 성별 정체성법

Ley de Identidad de Genero 2012

SHARE

세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center for Sexual rights And
Reproductive justice

세어는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장애여성공감의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만난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들이 2016년에 결성한 “성과 재생산 포럼(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을 전신으로 하여 2019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세어는 국내 최초로 성별, 연령, 장애, 인종, 국적, 성적 지향 · 성별 정체성 등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통합 센터를 지향합니다. 또한 누구도 차별 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비전

- 세어는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회를 만듭니다.

미션

- 세어는 망설임없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상담과 문턱없는 진료를 제공하여 질병, 낙인, 편견, 차별의 사회를 바꿉니다.
- 국내외의 다양한 현장 및 사회운동과 네트워킹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인식을 고양합니다.
-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성과 재생산 정보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고, 쉽고, 충분하고, 포괄적인 교육자료를 만들고 제공합니다.
- 현장을 바탕으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알립니다.

가치

- 세어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침해하는 부당한 권력에 맞섭니다.
- 세어는 수평적인 문화와 운영을 지향하며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행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 세어는 각자의 삶에서 실패와 기쁨을 경험하며 발견하는 권리를 지지하며, 시혜나 보호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 세어는 교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정상성에 도전하는 변화를 위해 함께 연대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조직들과 경험과 전문성을 나눕니다.

- 셰어는 현장에 기반함과 동시에 현장을 조직해나갑니다.
- 셰어는 우리의 활동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넓은 운동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며, 비서구 아시아 지역으로서의 탈식민적 관점을 견지합니다.
- 셰어는 낙인과 동정, 판단과 교정이 아닌 나와 서로의 쾌락 및 욕망을 긍정하며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찾아가도록 응원합니다.
- 셰어는 특정한 성과 재생산을 불법화, 범죄화하는 것에 저항하며, 금지가 아닌 권리를 활성화합니다.

후원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셰어의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현금(정기 자동 출금 및 일시 납입) 및 물품, 공간, 자료 등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단체 구성 상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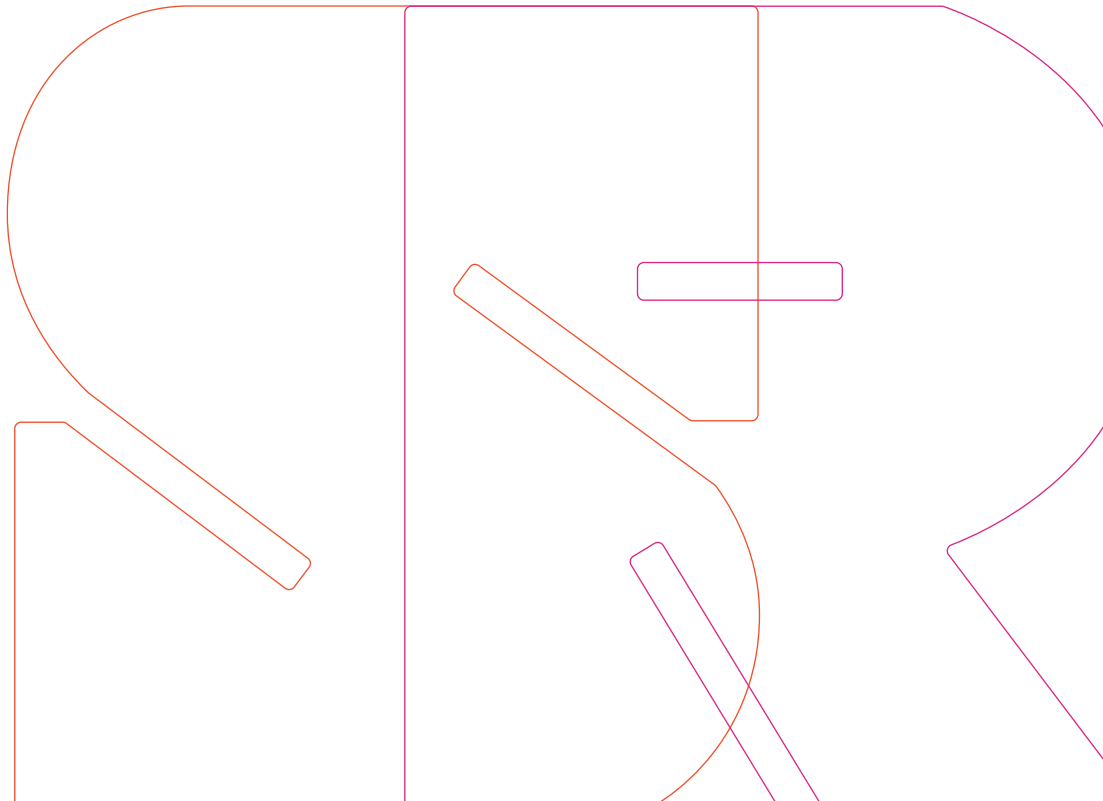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CMS 등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셔야 하며,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 전화가 필요합니다. 휴대 전화가 없으실 경우 문의를 남겨 주시면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srhr.kr
- 이메일 share.srhr@gmail.com

일시 후원

국민은행 778801-04-428814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법안 해설집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폐지를 넘어 권리를!**

만든 사람들

김선혜 김정혜 장임다혜 이유림 이은진 최현정

발행처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발행일

2020년 11월 4일